

시보는 읍·면사무소에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6호 2023. 2. 8.(수)

**고시**

광양시 고시 제2023-36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변경 고시	1
광양시 고시 제2023-3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2
광양시 고시 제2023-4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3
광양시 고시 제2023-4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4
광양시 고시 제2023-4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5
광양시 고시 제2023-4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고시	6
광양시 고시 제2023-5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8
광양시 고시 제2023-5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9
광양시 고시 제2023-5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0
광양시 고시 제2023-5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1
광양시 고시 제2023-5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2
광양시 고시 제2023-5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3
광양시 고시 제2023-5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4
광양시 고시 제2023-58호	광양 도시관리 계획(광명·의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6
광양시 고시 제2023-60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60

**공고**

광양시 공고 제2023-271호	원전출국자 등 명의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62
광양시 공고 제2023-280호	차량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동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64

**조 례**

광양시 조례 제1983호 광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65  
 광양시 조례 제1984호 광양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70  
 광양시 조례 제1985호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73  
 광양시 조례 제1986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76  
 광양시 조례 제1987호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0  
 광양시 조례 제1988호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88  
 광양시 조례 제1989호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98  
 광양시 조례 제1990호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6  
 광양시 조례 제1991호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조례 ..... 109  
 광양시 조례 제1992호 광양시 동물보호 조례 ..... 115  
 광양시 조례 제1993호 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123  
 광양시 조례 제1994호 광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127

**규 칙**

광양시 규칙 제431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 130  
 광양시 규칙 제432호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132

회 람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797-2323, 행정2713)

##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변경 내역〉

연번	도 로 명 주소		변경고시일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1	광양시 눈소로 179	광양시 눈소10길 35	2023. 02. 08.	신청에 따른 건물번호 변경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2373)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 02. 08.

광 양 시 장

광양시 고시 제2023-38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동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7**
	성명	김*희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726-1
	면적	80m <sup>2</sup>
점용목적		토지의점용
점용내용		경작
점용기간		2023. 1. 1. ~ 2027.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동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광양읍 봉정길 *_*
	성명	김*호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1205-8
	면적	1557㎡
점용목적		토지의점용
점용내용		농작물 경작 및 창고 진출입로
점용기간		당초: 2017. 7. 13. ~ 2025. 7. 10. 변경: 2017. 7. 13. ~ 2028. 6. 26.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고시 제2023-44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추산천
점용자	주소	순천시 매곡동 575 서한이다음 1**동7**호
	성명	전*채
점용지역	위치	당초: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908-1 변경: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908-1의 1필지
	면적	당초: 50㎡ 변경: 60㎡
점용목적		토지의점용
점용내용		경작
점용기간		당초: 2008. 2. 1. ~ 2023. 2. 1. 변경: 2008. 2. 1. ~ 2027.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서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봉강면 마시길 *_**
	성명	유*식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봉강면 구서리 305
	면적	270㎡
점용목적		토지의점용
점용내용		경작
점용기간		당초: 2008. 2. 1. ~ 2023. 2. 1. 변경: 2008. 2. 1. ~ 2027.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고시 제2023-48호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고시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일

### 광 양 시 장

####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암석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해제하고자 함.

####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현황

지구	위 치	지 정 내 용			지정·해제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		
진상 비평	진상면 비평리 산18번지 일원	붕괴 위험	D	29,769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신규
다압 도사2	다압면 도사리 169-1번지 일원	"	D	18,464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신규
옥곡 명주2	진상면 신금리 산10-1번지일원	"	D	21,178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소 해소	해제
진월 망덕	진월면 망덕리 55-1번지일원	"	D	49,000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소 해소	해제
중마 와우	마동 12-2번지 일원	"	D	20,310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소 해소	해제
태인 장내	태인동 378번지 일원	"	D	6,125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소 해소	해제

### 3.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진상 비평	2024년 이후	5,000	사면정비 A=29,769m <sup>2</sup>	신규지정
다압 도사2	2024년 이후	4,000	사면정비 A=18,464m <sup>2</sup>	신규지정

※ 사업시기는 예산(국·도비)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가능함

### 4.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다.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5. 행위허가 등 사전협의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우리 시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야 함.

### 6.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일 : 2023. 2. 2.

### 7. 문 의 처 : 광양시청 안전총괄과 ☎ 061-797-3266

광양시 고시 제2023-50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응동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진상면 신전길 1*-*
	성명	김*기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1102
	면적	975㎡
점용목적		토지의점용
점용내용		경작
점용기간		당초: 2008. 2. 1. ~ 2023. 12. 31. 변경: 2008. 2. 1. ~ 2028.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동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광양읍 회암3길 *_*
	성명	이*숙
점용지역	위치	기존: 광양시 옥룡면 산남리 254-3 변경: 광양시 옥룡면 산남리 254-3 외 1필지
	면적	기존: 38㎡ 변경: 216㎡
점용목적	토지의점용	
점용내용	농작물 경작	
점용기간	당초: 2008. 2. 1. ~ 2023. 2. 1. 변경: 2008. 2. 1. ~ 2027.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고시 제2023-52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동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옥룡면 율천길 2*-*
	성명	주*례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옥룡면 율천리 707-2외 3필지
	면적	513㎡
점용목적		토지의점용
점용내용		농작물 경작
점용기간		2023. 1. 1. ~ 2027.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동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옥룡면 청평길 3**
	성명	홍*원
점용지역	위치	기존: 광양시 옥룡면 죽천리 505-1외 1필지 변경: 광양시 옥룡면 죽천리 505-1외 4필지
	면적	기존: 90㎡ 변경: 989㎡
점용목적	토지의점용	
점용내용	농작물 경작	
점용기간	당초: 2008. 2. 1. ~ 2023. 2. 1. 변경: 2008. 2. 1. ~ 2027.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고시 제2023-54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동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옥룡면 옥동길 9-**
	성명	곽*희
점용지역	위치	기존: 광양시 옥룡면 용곡리 707-1 변경: 광양시 옥룡면 용곡리 707-1외 2필지
	면적	기존: 42㎡ 변경: 107㎡
점용목적		토지의점용
점용내용		농작물 경작
점용기간		당초: 2013. 12. 10. ~ 2023. 12. 10. 변경: 2013. 12. 10. ~ 2027.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동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7**
	성명	이*관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옥룡면 용곡리 1604
	면적	기존: 174㎡ 변경: 226㎡
점용목적		토지의점용
점용내용		농작물 경작
점용기간		당초: 2008. 2. 1. ~ 2023. 2. 1. 변경: 2008. 2. 1. ~ 2027.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고시 제2023 - 57호

## 광양 도시관리계획(성황도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광양시 성황동 일원의 성황도이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9일

광 양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다음조서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광양시청 도시재생과 비치)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재생과(☎061-797-3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나) 도시공간시설(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학교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6	공공 청사	공공 청사	성황동 1861 일원	6,612.2	-	6,612.2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17	공공 청사	공공 청사	성황동 1920 일원	1,251.3	-	1,251.3	전남 2017-35호 (17.2.2)	
신설	18	공공 청사	공공 청사	성황동 1860-1 일원	-	증)3,544.9	3,544.9	-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8	공공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li> <li>- 위치 : 성황동 1860-1 일원</li> <li>- 면적 : 3,544.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서 도입을 위한 공공청사 신설</li> </ul>

라) 방재시설(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나) 준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다)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18,328.9	감)3,544.9	114,784.0	-	118,328.9	감)3,544.9	114,784	
공동 주택	L-1	24,845.0	-	24,845.0	성황동 1862 일원	24,845.0	-	24,845.0	
	L-2	35,569.0	-	35,569.0	성황동 1860 일원	35,569.0	-	35,569.0	
	L-3	54,370.0	-	54,370.0	성황동 1856 일원	54,370.0	-	54,370.0	
	L-4	3,544.9	감)3,544.9	-	성황동 1860-1 일원	3,544.9	감)3,544.9	-	

■ 공동주택 용지 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L-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지</li> <li>- 위치 : 성황동 1860-1 일원</li> <li>- 면적 : 3,544.9㎡ → 0㎡, 감)3,544.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서 도입을 위한 L-4 공동주택용지 폐지</li> </ul>

라) 상업용지(변경없음)

마) 공공시설용지(변경)

(1) 공공청사(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7,863.5	증)3,544.9	11,408.4	-	7,863.5	증)3,544.9	11,408.4	
공공 청사	공1	6,612.2	-	6,612.2	성황동 1861 일원	6,612.2	-	6,612.2	
	공2	1,251.3	-	1,251.3	성황동 1920 일원	1,251.3	-	1,251.3	
	공3	-	증)3,544.9	3,544.9	성황동 1860-1 일원	-	증)3,544.9	3,544.9	

■ 공공청사 용지 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li> <li>- 위치 : 성황동 1860-1 일원</li> <li>- 면적 : 3,544.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서 도입을 위한 공공청사 신설</li> </ul>

- (2) 학교시설용지(변경없음)
- (3)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4) 복합교육연구시설(변경없음)

**4) 건축물에 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나) 준주거시설용지(준주거지역)(변경없음)

다)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기정)

도 면 번호	위 치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L	L-1 L-2 L-3 L-4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li> <li>- 부대복리시설은 주민편의시설로서 「주택법」 제2조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 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함</li> </ul>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이외의 용도</li> <li>• 학교환경위생구역내에 위치한 부대복리시설 중 단지내 상가는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는 제한함</li> </ul>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220%이하	
		높 이	25층이하 (단, L-2은 22층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탑상형 배치구간</li> <li>- 탑상형 배치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li> <li>• 건축물 직각배치구간</li> <li>-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그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음</li> <li>1. 직각배치구간에 관한 배치기준은 ‘제1편 제1장 제10조의③항(직각배치구간)’의 규정에 따른다.</li> <li>2. 단, 대지형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기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봄</li> </ul>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L	L-1 L-2 L-3 L-4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의2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단지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li> <li>-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상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li> <li>-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경로당등은 보행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li> </ul> </li> <li>•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③항, 제55조의2 ⑦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li> </ul> </li> <li>• 주거동의 길이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내 특성을 고려한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경관차폐감의 저감 및 질서있는 스카이라인의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주택층수 및 전용면적을 고려하여 판상형 공동주택의 경우 6호연립 이하 또는 주거동의 길이를 60m 이하로 계획 한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제외한다.</li> </ul> </li> <li>•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건축물의 시각적 위압감을 저감하고, 단지 경관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며, 다양하면서 동질감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를 규정한다.</li> <li>- 주택단지 안에 별도로 설치하는 부대복리시설은 경사지붕 등으로 주거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li> <li>- 건축물의 배치를 위한 단차 발생시 1.5m 이하의 단차는 구배 50%이하의 자연 법면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1.5m를 초과하는 단차는 자연법면과 옹벽설치를 설치할 수 있다.</li> </ul> </li> </ul>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L	L-1 L-2 L-3 L-4	형 태	<p>1. 3m 이상 높이의 옹벽 설치 시 벽면디자인 또는 벽면녹화를 한다.</p> <p>2. 옹벽은 과도한 높이를 지양하고 단순노출콘크리트 등을 설치하여 가로 경관과 도시미관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단을 조성, 법면 녹화나 벽돌치장, 조경화단 등 자연 친화적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p> <p>3. 옹벽 및 법면이 계단식으로 반복될 경우 연속하여 3단 이상의 조성은 불허한다.</p> <p>- 층수변화는 아래기준을 따르도록 한다.</p> <p>1. 동일 주거동내 : 동일 주거동내에서 층수변화를 줄 경우 5개층 이하로 계획</p> <p>2. 인접 주거동간 : 인접한 동간(각 동의 외벽 간 최단거리가 10m 미만인 경우)의 층수변화는 동일 주거동내의 층수변화에 따른다.</p> <p>• 필로티</p> <p>- 필로티 구조로 건축할 경우 '제1편 제1장 제10조의 ④항(필로티구조)'의 규정을 따른다.</p> <p>• 건축물 외관 및 지붕형태, 옥탑에 관한 사항</p> <p>- 건축물과 하늘이 만나는 곳을 아름답게 연출하며 다양한 경관장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하고 다양한 디자인 등으로 미관을 개선하며 계단실, 기계실 등은 지붕디자인(조형물 등)을 통하여 과도하게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비상시 최상층 또는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p> <p>- 주거동은 최상층부(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이내), 기준층부(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층부(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이내)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최상층부는 재질, 색채, 외관디자인 등이 지붕과 일체감 있게 디자인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598 1697 1406 1928"> <thead> <tr> <th>구 분</th> <th>최상층부</th> <th>기준층부</th> <th>지상층부</th> </tr> </thead> <tbody> <tr> <td>15층 이하</td> <td>최상층</td> <td>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td> <td>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td> </tr> <tr> <td>16층 이상</td> <td>최상층에서부터 2개층</td> <td>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td> <td>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td> </tr> </tbody> </table>	구 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15층 이하	최상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16층 이상	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구 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15층 이하	최상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16층 이상	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L	L-1 L-2 L-3 L-4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외관 및 지붕형태, 옥탑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상형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하고 탑상형 공동주택의 지붕은 옥탑구조물을 설치하여 조형성과 통일성을 부여함하며, 탑상형의 옥탑부에 상징적 조명 연출을 도모</li> <li>- 근린상가, 부대복리시설의 형태는 독창성과 고품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근린상가는 옥상에 적치물 설치를 금하기 위하여 경사지붕 등을 도입하며, 광고물을 고려하여 입면계획 실시</li> </ul> </li> <li>• 담장 및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단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승인권자(인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담장설치를 할 수 있다.</li> <li>- 담장을 설치할 경우 담장의 높이는 1m 이하로 하며 담장의 재료는 생울타리로 한다. 단, 옹벽, 사면 발생 등 지형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연석 쌓기 등 친환경적 소재를 이용하여 경계부를 처리하도록 한다.</li> <li>-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생울타리 설치로 인해 이용객이 해당시설에 진입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li> <li>-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li> </ul> </li> </ul>
		색채 및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공공시설물에 관한사항은 건축물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공공시설물 지침에 따른다.</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다만, 가로활성화 및 범죄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의 건축한계선은 1m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li> </ul>

다)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L	L-1 L-2 L-3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li> <li>- 부대복리시설은 주민편의시설로서 「주택법」 제2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 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함</li> </ul>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이외의 용도</li> <li>학교환경위생구역내에 위치한 부대복리시설 중 단지내 상가는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는 제한함</li> </ul>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220%이하	
		높 이	25층이하 (단, L-2은 22층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상형 배치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상형 배치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li> </ul> </li> <li>• 건축물 직각배치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그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음</li> <li>1. 직각배치구간에 관한 배치기준은 '제1편 제1장 제10조의③항(직각배치 구간)'의 규정에 따른다.</li> <li>2. 단, 대지형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기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봄</li> </ul> </li> <li>•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의2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단지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li> <li>-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상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li> <li>-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경로당등은 보행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li> </ul> </li> <li>•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③항, 제55조의2 ⑦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li> </ul> </li> <li>• 주거동의 길이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내 특성을 고려한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경관차폐감의 저감 및 질서있는 스카이라인의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주택층수 및 전용면적을 고려하여 판상형 공동주택의 경우 6호연립 이하 또는 주거동의 길이를 60m 이하로 계획 한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제외한다.</li> </ul> </li> </ul>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L	L-1 L-2 L-3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건축물의 시각적 위압감을 저감하고, 단지 경관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며, 다양하면서 동질감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를 규정한다.</li> <li>- 주택단지 안에 별도로 설치하는 부대복리시설은 경사지붕 등으로 주거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li> <li>- 건축물의 배치를 위한 단차 발생시 1.5m 이하의 단차는 구배 50% 이하의 자연 법면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1.5m를 초과하는 단차는 자연 법면과 옹벽설치를 설치할 수 있다.</li> </ul> </li> </ul>										
		형 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3m 이상 높이의 옹벽 설치 시 벽면디자인 또는 벽면녹화를 한다.</li> <li>2. 옹벽은 과도한 높이를 지양하고 단순노출콘크리트 등을 설치하여 가로경관과 도시미관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단을 조성, 법면 녹화나 벽돌치장, 조경화단 등 자연 친화적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li> <li>3. 옹벽 및 법면이 계단식으로 반복될 경우 연속하여 3단 이상의 조성은 불허한다.</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층수변화는 아래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일 주거동내 : 동일 주거동내에서 층수변화를 줄 경우 5개층 이하로 계획</li> <li>2. 인접 주거동간 : 인접한 동간(각 동의 외벽 간 최단거리가 10m 미만인 경우)의 층수변화는 동일 주거동내의 층수변화에 따른다.</li> </o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로티 구조로 건축할 경우 ‘제1편 제1장 제10조의 ④항(필로티구조)’의 규정을 따른다.</li> </ul> </li> <li>• 건축물 외관 및 지붕형태, 옥탑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과 하늘이 만나는 곳을 아름답게 연출하며 다양한 경관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하고 다양한 디자인 등으로 미관을 개선하며 계단실, 기계실 등은 지붕디자인(조형물 등)을 통하여 과도하게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비상시 최상층 또는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li> <li>- 주거동은 최상층부(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이내), 기준층부(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층부(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이내)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최상층부는 재질, 색채, 외관디자인 등이 지붕과 일체감 있게 디자인 한다.</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20%;">최상층부</th> <th style="width: 20%;">기준층부</th> <th style="width: 20%;">지상층부</th> </tr> </thead> <tbody> <tr> <td>15층 이하</td> <td>최상층</td> <td>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td> <td>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td> </tr> <tr> <td>16층 이상</td> <td>최상층에서부터 2개층</td> <td>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td> <td>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td> </tr> </tbody> </table>	구 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15층 이하	최상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16층 이상	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구 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15층 이하	최상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16층 이상	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L	L-1 L-2 L-3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외관 및 지붕형태, 옥탑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상형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하고 탑상형 공동주택의 지붕은 옥탑구조물을 설치하여 조형성과 통일성을 부여함하며, 탑상형의 옥탑부에 상징적 조명 연출을 도모</li> <li>- 근린상가, 부대복리시설의 형태는 독창성과 고품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근린상가는 옥상에 적치물 설치를 금하기 위하여 경사지붕 등을 도입하며, 광고물을 고려하여 입면계획 실시</li> </ul> </li> <li>• 담장 및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단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승인권자(인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담장설치를 할 수 있다.</li> <li>- 담장을 설치할 경우 담장의 높이는 1m 이하로 하며 담장의 재료는 생울타리로 한다. 단, 옹벽, 사면 발생 등 지형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연석 쌓기 등 친환경적 소재를 이용하여 경계부를 처리하도록 한다.</li> <li>-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생울타리 설치로 인해 이용객이 해당시설에 진입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li> <li>-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li> </ul> </li> </ul>
		색채 및 기타사항	• 건축물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공공시설물에 관한사항은 건축물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공공시설물 지침에 따른다.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다만, 가로활성화 및 범죄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의 건축한계선은 1m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공동주택용지 주택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변경) >

구 분	주택유형	필지면적 (㎡)	용적률	건폐율	최고층수 (층)	세대수 (호)	인구수 (인)	비고	
기정	L-1	60~85㎡	24,845.0	220%이하	30%이하	25	501	1,303	임대
변경	L-2	60~85㎡	35,569.0	220%이하	30%이하	22	720	1,872	분양
기정	L-3	60~85㎡	54,370.0	220%이하	30%이하	25	1,096	2,850	분양
폐지	L-4	60~85㎡	3,544.9	220%이하	30%이하	25			분양

※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 필지면적은 주택유형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별 대지구분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내역을 따른다.

## 라) 상업용지(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 마) 공공청사1(제3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2(제2종일반주거지역)(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공1, 공2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li> <li>•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부속용도에 한함)</li> <li>• 업무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미만. 단, 공공청사1의 경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하) 중 공공업무시설</li> <li>• 건축물 부속용도</li> </ul>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	
		배치	-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외벽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내 랜드마크 시설로 건물의 외관은 도시골격과 부합하여 일관된 질서가 유지되도록 구성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시설별로 유사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도록 한다.</li> <li>-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공원에 접한 경우 공원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li> </ul> </li> <li>•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한다.</li> <li>•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를 이용한 높이 1m 이하의 담장 설치 권장한다.</li> </ul> </li> </ul>	
		색채 및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공공시설물에 관한사항은 건축물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공공시설물 지침에 따른다.</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li> </ul>	

마) 공공청사1, 3(제3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2(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공1, 공2, 공3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li> <li>•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부속용도에 한함)</li> <li>• 업무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미만. 단, 공공청사1, 3의 경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하) 중 공공업무시설</li> <li>• 건축물 부속용도</li> </ul>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	
		배 치	-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외벽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내 랜드마크 시설로 건물의 외관은 도시골격과 부합하여 일관된 질서가 유지되도록 구성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시설별로 유사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도록 한다.</li> <li>-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공원에 접한 경우 공원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li> </ul> </li> <li>•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한다.</li> <li>•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를 이용한 높이 1m 이하의 담장 설치 권장한다.</li> </ul> </li> </ul>	
		색채 및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공공시설물에 관한사항은 건축물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공공시설물 지침에 따른다.</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li> </ul>	

바) 교육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_중학교, 제3종일반주거지역\_복합교육연구시설)(변경없음)

사) 주차장1(제3종일반주거), 주차장2~4(준주거), 주차장5~9(제1종일반주거)(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해당없음). 끝.

광양시 고시 제2023-58호

## 광양 도시관리계획(광영·의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광양시 광영동, 옥곡면 신금리 일원의 광영·의암지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9일

광 양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다음조서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광양시청 도시재생과 비치)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재생과(☎061-797-3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1	광양 광영·의암 지구단위계획구역	옥곡면 신금리 일원	539,004.5	-	539,004.5	전고 제2012-54호 (2012.03.05.)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39,004.5	-	539,004.5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70,715.0	-	170,715.0	31.5	
	제3종일반주거지역	114,890.0	-	114,890.0	21.2	
	준주거지역	105,066.0	-	105,066.0	19.4	
준공업지역		60,284.5	-	60,284.5	11.6	
자연녹지지역		88,049.0	-	88,049.0	16.3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1) 교통시설 - (1) 도 로

#### ① 도로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70	11,922	138,106.3	8	4,147	75,305.2	28	3,865	31,821.3	34	3,910	30,979.8
중로	14	5,760	96,165.7	4	3,346	67,266.1	2	280	3,940.9	8	2,134	24,958.7
소로	56	6,162	41,940.6	4	801	8,039.1	26	3,585	27,880.4	26	1,776	6,021.1

## ②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1	136	20	국지 도로	849	중로1-67호	중로1-63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중로	1	137	20	국지 도로	434	중로1-67호	중로1-63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중로	1	66	20	국지 도로	834 (430)	중로1-67호	중로2-67호	일반 도로	전고239 호 91.10.12.	( )구역내 일부편입
기정	중로	1	67	20- 23	국지 도로	2,631 (1,633)	대로1-22호	중로1-68호	일반 도로	광양47호 02.12.18.	( )구역내 일부편입
기정	중로	2	143	15	국지 도로	155	중로1-67호	신금리 101-2전 일원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중로	2	144	15	국지 도로	125	중로1-136호	중로3-133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중로	3	131	12	국지 도로	281	중로1-136호	중로2-143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중로	3	132	12	국지 도로	36	중로1-136호	소로1-234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중로	3	133	12	국지 도로	844	중로1-136호	중로1-233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중로	3	134	12	국지 도로	218	중로2-144호	중로3-133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중로	3	135	12	국지 도로	117	중로2-144호	중로3-134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중로	3	136	12	국지 도로	135	중로1-136호	중로3-133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중로	3	137	12	국지 도로	206	중로3-136호	중로3-138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중로	3	138	12	국지 도로	297	중로3-137호	중로3-133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1	232	10	국지 도로	307	중로3-131호	중로3-131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1	233	10	국지 도로	88	중로3-131호	소로2-626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1	234	10	국지 도로	138	중로3-133호	소로2-628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1	235	10	국지 도로	268	중로3-133호	중로3-133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 ( )는 광영·의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편입구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624	8	국지 도로	290	중로2-143호	소로1-233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25	8	국지 도로	45	중로3-131호	소로2-624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26	8	국지 도로	137	소로1-233호	소로2-624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27	8	국지 도로	36	중로1-136호	소로1-233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28	8	국지 도로	233	소로1-234호	소로2-631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29	8	국지 도로	199	소로1-234호	소로2-631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30	8	국지 도로	169	소로1-234호	소로2-631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31	8	국지 도로	178	중로1-67호	중로3-133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32	8	국지 도로	50	소로2-631호	소로2-634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33	8	국지 도로	166	소로2-632호	소로2-636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34	8	국지 도로	118	소로2-632호	소로2-636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35	8	국지 도로	154	소로2-632호	소로2-636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36	8	국지 도로	129	중로3-133호	소로3-613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37	8	국지 도로	120	소로2-640호	소로2-636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38	8	국지 도로	107	소로2-640호	소로2-636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39	8	국지 도로	94	소로2-640호	소로2-636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40	8	국지 도로	128	중로3-133호	소로3-614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41	8	국지 도로	137	소로1-235호	소로2-640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42	8	국지 도로	133	소로2-644호	소로2-640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 ( )는 광영·의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편입구간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643	8	국지 도로	128	소로2-644호	소로2-640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44	8	국지 도로	84	소로1-235호	소로3-615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45	8	국지 도로	156	소로2-646호	소로2-644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46	8	국지 도로	216	소로1-235호	소로2-644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47	8	국지 도로	35	중로1-137호	소로2-646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48	8	국지 도로	186	중로2-646호	소로2-649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49	8	국지 도로	286 (142)	중로1-79호	소로2-648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 )구역내 일부편입
기정	소로	3	598	4	특수 도로	87	중로1-67호	중로2-143호	보행자 전용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599	4	특수 도로	82	중로2-143호	소로3-600호	보행자 전용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00	4	특수 도로	388	중로1-66호	소로2-626호	보행자 전용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01	4	특수 도로	25	소로2-624호	소로3-600호	보행자 전용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02	4	특수 도로	38	중로1-67호	소로1-232호	보행자 전용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03	4	특수 도로	38	중로1-67호	소로1-232호	보행자 전용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04	4	특수 도로	48	중로3-131호	소로1-232호	보행자 전용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05	4	특수 도로	38	중로1-67호	소로1-232호	보행자 전용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06	4	특수 도로	36	중로1-67호	소로2-628호	보행자 전용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07	4	특수 도로	35	중로1-67호	소로2-628호	보행자 전용 도로	전남19호 15.1.29.	

※ ( )는 광영·의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편입구간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3	608	4	특수 도로	49	소로2-628호	소로2-6629	보행자 전용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09	4	특수 도로	43	소로2-629호	소로2-630호	보행자 전용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10	4	특수 도로	45	중로3-133호	소로2-630호	보행자 전용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11	4	특수 도로	45	중로3-133호	소로2-633호	보행자 전용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12	4	특수 도로	21	소로2-635호	연결녹지115	보행자 전용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13	4	특수 도로	21	소로2-636호	연결녹지115	보행자 전용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14	4	특수 도로	21	소로2-640호	연결녹지115	보행자 전용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15	4	특수 도로	21	소로2-644호	연결녹지115	보행자 전용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16	4	특수 도로	21	소로2-646호	연결녹지115	보행자 전용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17	4	특수 도로	35	중로1-137호	소로1-235호	보행자 전용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18	4	특수 도로	35	중로1-137호	중로3-138호	보행자 전용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19	4	특수 도로	50	중로1-137호	중로3-138호	보행자 전용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20	4	특수 도로	36	중로1-136호	중로3-134호	보행자 전용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21	4	특수 도로	20	중로1-88호	소로3-622호	보행자 전용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22	4	국지 도로	452	소로3-623호	중로1-67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23	4	국지 도로	46	소로3-622호	중로1-67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 ( )는 광영·의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편입구간

## (2) 주차장

## ①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1,120.6	-	11,120.6		
기정	171	주차장	옥곡면 신금리 1726차	1,988.7	-	1,988.7	전남19호 15.1.29.	
기정	172	주차장	옥곡면 신금리 1802차	1,296.7	-	1,296.7	전남19호 15.1.29.	
기정	173	주차장	광영동 931차	2,316.3	-	2,316.3	전남19호 15.1.29.	
기정	174	주차장	광영동 877차	1,002.9	-	1,002.9	전남19호 15.1.29.	
기정	175	주차장	광영동 1088차	4,516.0	-	4,516.0	전남19호 15.1.29.	

## 2) 공간시설

## (1) 녹 지

## ①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66,108.4 (37,380.3)	-	66,108.4 (37,380.3)		( )는 구역내 편입면적
기정	41	완41	완충 녹지	옥곡면 신금리 1628공 일원	36,296.0 (7,567.9)	-	36,296.0 (7,567.9)	전남331호 08.3.27	구역내7,567.9㎡ 구역외28,728.1㎡
기정	113	경1	경관 녹지	옥곡면 신금리 1774공	13,239.6	-	13,239.6	전남19호 15.1.29.	
기정	114	연1	연결 녹지	옥곡면 신금리 1875공	3,539.9	-	3,539.9	전남19호 15.1.29.	
기정	115	연2	연결 녹지	옥곡면 신금리 1993공 일원	9,736.7	-	9,736.7	전남19호 15.1.29.	

## (2) 공 원

## ①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0,368.4	-	60,368.4		
기정	168	의암1	소공원	옥곡면 신금리 1725공	1,027.0	-	1,027.0	전남19호 15.1.29.	
기정	169	의암2	소공원	옥곡면 신금리 1881공 일원	6,245.1	-	6,245.1	전남19호 15.1.29.	
기정	170	의암3	소공원	광영동 1883공	975.6	-	975.6	전남19호 15.1.29.	
기정	171	의암4	체육 공원	광영동 1089공	52,120.7	-	52,120.7	전남19호 15.1.29.	유수지1과 중복결정

### 3) 공공·문화체육시설

#### (1) 공공청사

##### ①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2	공공청사	광영동 1087공	9,833.6	-	9,833.6	전남19호 15.1.29.	

### 4) 방재시설

#### (1) 유수지

##### ①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	유수지	저류 시설	광영동 1087공	4,294.0	-	4,294.0	전남19호 15.1.29.	공원4와 중복결정

## 5) 환경기초시설

## (1) 하수도

## ①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하수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옥곡면 신금리 1993공	44.0	-	44.0	전남19호 15.1.29.	녹지와 중복결정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1)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84,647.7	-	-	84,647.7	
A1~ A20	A1	1,541.0	-1	신금리 1724대	282.7	
			-2	신금리 1723대	293.1	
			-3	신금리 1722대	171.0	
			-4	신금리 1721대	261.1	
			-5	신금리 1720대	248.8	
			-6	신금리 1719대	284.3	
	A2	2,643.4	-1	신금리 1743대	236.4	
			-2	신금리 1744대	236.4	
			-3	신금리 1745대	236.4	
			-4	신금리 1746대	224.5	
			-5	신금리 1747대	253.2	
			-6	신금리 1748대	253.2	
			-7	신금리 1749대	301.7	
			-8	신금리 1750대	182.6	
			-9	신금리 1751대	430.2	
			-10	신금리 1752대	288.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sup>2</sup>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A1~ A20	A3	3,103.2	-1	신금리 1764대	231.8	
			-2	신금리 1763대	262.0	
			-3	신금리 1762대	262.0	
			-4	신금리 1761대	299.7	
			-5	신금리 1760대	243.1	
			-6	신금리 1759대	243.2	
			-7	신금리 1758대	244.3	
			-8	신금리 1757대	297.7	
			-9	신금리 1756대	268.6	
			-10	신금리 1755대	212.2	
			-11	신금리 1754대	305.4	
			-12	신금리 1753대	233.2	
	A4	3,344.1	-1	신금리 1740대	344.1	
			-2	신금리 1739대	344.1	
			-3	신금리 1738대	332.5	
			-4	신금리 1737대	197.5	
			-5	신금리 1736대	211.7	
			-6	신금리 1735대	239.7	
			-7	신금리 1734대	232.7	
			-8	신금리 1733대	237.8	
			-9	신금리 1732대	247.4	
			-10	신금리 1731대	206.7	
			-11	신금리 1730대	236.5	
			-12	신금리 1729대	256.7	
	A5	4,884.0	-1	신금리 1872대	285.5	
			-2	신금리 1871대	285.4	
			-3	신금리 1870대	407.1	
			-4	신금리 1869대	243.6	
			-5	신금리 1868대	348.5	
			-6	신금리 1867대	306.9	
			-7	신금리 1866대	297.0	
			-8	신금리 1865대	267.6	
			-9	신금리 1864대	198.1	
			-10	신금리 1863대	198.0	
			-11	신금리 1862대	241.6	
			-12	신금리 1861대	232.6	
			-13	신금리 1860대	356.6	
			-14	신금리 1858대	221.6	
			-15	신금리 1857대	199.2	
-16	신금리 1856대	199.0				
-17	신금리 1855대	334.8				
-18	신금리 1854대	260.9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sup>2</sup>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A1~ A20	A6	5,948.6	-1	신금리 1852대	236.6	
			-2	신금리 1851대	264.6	
			-3	신금리 1850대	194.4	
			-4	신금리 1849대	170.3	
			-5	신금리 1848대	233.3	
			-6	신금리 1847대	353.1	
			-7	신금리 1846대	249.5	
			-8	신금리 1845대	217.3	
			-9	신금리 1844대	151.9	
			-10	신금리 1843대	157.0	
			-11	신금리 1842대	245.7	
			-12	신금리 1841대	254.6	
			-13	신금리 1840대	254.7	
			-14	신금리 1839대	224.3	
			-15	신금리 1838대	209.2	
			-16	신금리 1837대	259.5	
			-17	신금리 1836대	269.2	
			-18	신금리 1835대	250.0	
			-19	신금리 1834대	319.2	
			-20	신금리 1832대	303.8	
			-21	신금리 1831대	189.3	
			-22	신금리 1830대	223.3	
			-23	신금리 1829대	223.3	
			-24	신금리 1828대	204.8	
			-25	신금리 1827대	289.7	
	A7	6,908.6	-1	신금리 1825대	344.8	
			-2	신금리 1824대	323.8	
			-3	신금리 1823대	258.9	
			-4	신금리 1822대	420.6	
			-5	신금리 1821대	471.9	
			-6	신금리 1820대	388.0	
			-7	신금리 1819대	392.9	
			-8	신금리 1818대	203.1	
			-9	신금리 1817대	313.0	
			-10	신금리 1816대	305.3	
			-11	신금리 1815대	285.9	
			-12	신금리 1814대	272.9	
			-13	신금리 1813대	272.9	
			-14	신금리 1812대	330.0	
			-15	신금리 1811대	282.7	
			-16	신금리 1810대	394.3	
			-17	신금리 1809대	263.7	
			-18	신금리 1807대	290.4	
			-19	신금리 1806대	257.4	
-20	신금리 1805대	312.9				
-21	신금리 1804대	229.9				
-22	신금리 1803대	293.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sup>2</sup>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A1~ A20	A8	4,160.4	-1	신금리 1885대	256.0	
			-2	신금리 1901대	255.9	
			-3	신금리 1900대	258.0	
			-4	신금리 1899대	242.3	
			-5	신금리 1898대	234.9	
			-6	신금리 1897대	363.2	
			-7	신금리 1896대	232.6	
			-8	신금리 1895대	232.6	
			-9	신금리 1894대	200.9	
			-10	신금리 1893대	212.6	
			-11	신금리 1892대	261.0	
			-12	신금리 1891대	191.2	
			-13	신금리 1890대	229.5	
			-14	신금리 1889대	282.5	
			-15	신금리 1888대	255.9	
			-16	신금리 1887대	225.6	
			-17	신금리 1886대	225.7	
	A9	3,803.1	-1	신금리 1903대	189.4	
			-2	신금리 1916대	318.7	
			-3	신금리 1915대	407.0	
			-4	신금리 1914대	238.6	
			-5	신금리 1913대	269.5	
			-6	신금리 1912대	212.5	
			-7	신금리 1911대	265.9	
			-8	신금리 1910대	302.3	
			-9	신금리 1909대	302.3	
			-10	신금리 1908대	150.0	
			-11	신금리 1907대	261.1	
			-12	신금리 1906대	252.3	
			-13	신금리 1905대	316.7	
			-14	신금리 1904대	316.8	
	A10	3,595.6	-1	신금리 1918대	211.8	
			-2	신금리 1929대	207.1	
			-3	신금리 1928대	327.2	
			-4	신금리 1927대	297.7	
			-5	신금리 1926대	372.1	
			-6	신금리 1925대	372.1	
			-7	신금리 1924대	319.6	
			-8	신금리 1923대	240.3	
			-9	신금리 1922대	200.0	
			-10	신금리 1921대	350.6	
			-11	신금리 1920대	347.9	
			-12	신금리 1919대	349.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sup>2</sup>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A1~ A20	A11	7,463.4	-1	신금리 1932대	309.8	
			-2	신금리 1933대	258.5	
			-3	신금리 1934대	258.4	
			-4	신금리 1935대	258.4	
			-5	신금리 1936대	258.5	
			-6	신금리 1937대	205.2	
			-7	신금리 1938대	281.5	
			-8	신금리 1986대	243.1	
			-9	신금리 1987대	243.1	
			-10	신금리 1988대	243.1	
			-11	신금리 1989대	243.1	
			-12	신금리 1990대	243.4	
			-13	신금리 1991대	243.4	
			-14	광영동 849대	259.9	
			-15	광영동 850대	260.0	
			-16	광영동 851대	260.0	
			-17	광영동 852대	260.0	
			-18	광영동 853대	260.0	
			-19	광영동 854대	260.0	
			-20	광영동 855대	257.9	
			-21	광영동 856대	260.1	
			-22	광영동 1066대	258.0	
			-23	광영동 1067대	257.9	
			-24	광영동 1068대	263.0	
			-25	광영동 1069대	263.5	
			-26	광영동 1070대	263.4	
			-27	광영동 1071대	263.4	
			-28	광영동 1072대	263.4	
			-29	광영동 1073대	263.4	
	A12	3,987.3	-1	신금리 1941대	374.4	
-2			신금리 1955대	274.5		
-3			신금리 1954대	256.0		
-4			신금리 1953대	255.5		
-5			신금리 1952대	317.2		
-6			신금리 1951대	277.7		
-7			신금리 1950대	277.7		
-8			신금리 1949대	277.5		
-9			신금리 1948대	250.0		
-10			신금리 1947대	245.9		
-11			신금리 1946대	183.5		
-12			신금리 1945대	355.8		
-13			신금리 1944대	202.7		
-14			신금리 1943대	202.6		
-15			신금리 1942대	236.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sup>2</sup>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A1~ A20	A13	3,553.1	-1	신금리 1957대	230.6	
			-2	신금리 1969대	230.6	
			-3	신금리 1968대	230.6	
			-4	신금리 1967대	256.6	
			-5	신금리 1966대	229.1	
			-6	신금리 1965대	200.3	
			-7	신금리 1964대	399.0	
			-8	신금리 1963대	372.5	
			-9	신금리 1962대	403.3	
			-10	신금리 1961대	250.0	
			-11	신금리 1960대	256.6	
			-12	신금리 1959대	256.8	
			-13	신금리 1958대	237.1	
	A14	3,104.6	-1	신금리 1971대	366.0	
			-2	신금리 1983대	260.4	
			-3	신금리 1982대	200.0	
			-4	신금리 1981대	200.0	
			-5	신금리 1980대	200.0	
			-6	신금리 1979대	325.8	
			-7	신금리 1978대	201.0	
			-8	신금리 1977대	201.0	
			-9	신금리 1976대	165.0	
			-10	신금리 1975대	173.9	
			-11	신금리 1974대	243.8	
			-12	신금리 1973대	234.7	
			-13	신금리 1972대	333.0	
	A15	3,428.5	-1	광영동 905대	243.6	
			-2	광영동 904대	295.1	
			-3	광영동 903대	210.9	
			-4	광영동 902대	180.0	
			-5	광영동 901대	212.2	
			-6	광영동 900대	277.6	
			-7	광영동 899대	307.2	
			-8	광영동 898대	270.4	
			-9	광영동 897대	294.2	
			-10	광영동 896대	211.2	
			-11	광영동 895대	179.2	
			-12	광영동 894대	210.2	
			-13	광영동 893대	232.5	
-14	광영동 892대	304.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sup>2</sup>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A1~ A20	A16	3,292.2	-1	광영동 889대	250.0	
			-2	광영동 888대	275.4	
			-3	광영동 887대	275.3	
			-4	광영동 886대	275.3	
			-5	광영동 885대	277.0	
			-6	광영동 884대	291.2	
			-7	광영동 883대	276.7	
			-8	광영동 882대	280.8	
			-9	광영동 881대	279.2	
			-10	광영동 880대	279.1	
			-11	광영동 879대	279.3	
			-12	광영동 878대	252.9	
	A17	4,122.2	-1	광영동 859대	258.0	
			-2	광영동 875대	263.5	
			-3	광영동 874대	224.5	
			-4	광영동 873대	210.9	
			-5	광영동 872대	190.5	
			-6	광영동 871대	294.7	
			-7	광영동 870대	300.2	
			-8	광영동 869대	318.5	
			-9	광영동 868대	305.0	
			-10	광영동 867대	305.0	
			-11	광영동 866대	165.0	
			-12	광영동 865대	164.9	
			-13	광영동 864대	162.7	
			-14	광영동 863대	214.3	
			-15	광영동 862대	228.4	
			-16	광영동 861대	267.7	
			-17	광영동 860대	248.4	
	A18	5,943.4	-1	광영동 1020대	202.2	
			-2	광영동 1019대	283.6	
			-3	광영동 1018대	196.7	
			-4	광영동 1017대	296.9	
			-5	광영동 1016대	295.7	
			-6	광영동 1015대	224.2	
			-7	광영동 1014대	224.2	
			-8	광영동 1013대	215.0	
			-9	광영동 1012대	202.0	
			-10	광영동 1011대	287.3	
			-11	광영동 1010대	286.3	
			-12	광영동 1009대	259.2	
			-13	광영동 1008대	260.2	
			-14	광영동 1007대	286.6	
			-15	광영동 1006대	287.2	
-16			광영동 1005대	201.7		
-17			광영동 1004대	216.2		
-18			광영동 1003대	227.0		
-19			광영동 1002대	222.8		
-20			광영동 1001대	296.4		
-21			광영동 1000대	297.6		
-22			광영동 999대	192.6		
-23			광영동 998대	206.7		
-24			광영동 997대	275.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sup>2</sup>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A1~ A20	A19	5,218.2	-1	광영동 1022대	271.8	
			-2	광영동 1045대	177.3	
			-3	광영동 1044대	215.0	
			-4	광영동 1043대	214.7	
			-5	광영동 1042대	231.5	
			-6	광영동 1041대	231.5	
			-7	광영동 1040대	231.6	
			-8	광영동 1039대	200.1	
			-9	광영동 1038대	180.6	
			-10	광영동 1037대	180.6	
			-11	광영동 1036대	244.6	
			-12	광영동 1035대	222.4	
			-13	광영동 1034대	254.1	
			-14	광영동 1033대	254.0	
			-15	광영동 1032대	181.2	
			-16	광영동 1031대	170.0	
			-17	광영동 1030대	177.3	
			-18	광영동 1029대	233.7	
			-19	광영동 1028대	223.4	
			-20	광영동 1027대	228.5	
			-21	광영동 1026대	220.5	
			-22	광영동 1025대	221.5	
			-23	광영동 1024대	221.9	
			-24	광영동 1023대	230.4	
	A20	4,602.8	-1	광영동 1048대	301.3	
			-2	광영동 1064대	301.3	
			-3	광영동 1063대	231.6	
			-4	광영동 1062대	174.8	
			-5	광영동 1061대	195.5	
			-6	광영동 1060대	233.2	
			-7	광영동 1059대	287.6	
			-8	광영동 1058대	283.2	
			-9	광영동 1057대	292.7	
			-10	광영동 1056대	300.4	
			-11	광영동 1055대	281.4	
			-12	광영동 1054대	286.1	
			-13	광영동 1053대	228.0	
-14	광영동 1052대	301.4				
-15	광영동 1051대	290.9				
-16	광영동 1050대	306.0				
-17	광영동 1049대	307.4				

## 2)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sup>2</sup>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m <sup>2</sup> )	
합 계		109,509.8	-	109,509.8	
B1 ~ B3	소계	13,480.0	-	13,480.0	
	B1	3,857.8	신금리 1718대	3,857.8	
	B2	4,496.8	신금리 1773대	4,496.8	
	B3	5,125.4	신금리 1874대	5,125.4	
C1 ~ C2	소계	96,029.8	-	96,029.8	
	C1	51,611.6	신금리 1663대	51,611.6	
	C2	44,418.2	신금리 1876대	44,418.2	

## 3) 준주거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sup>2</sup>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합 계		59,018.9	-	-	59,018.9	
D1~ D16	D1	3,661.3	-1	신금리 1665대	3,661.3	
	D2	6,549.6	-1	신금리 1670대	376.0	
			-2	신금리 1669대	278.8	
			-3	신금리 1668대	279.7	
			-4	신금리 1667대	359.8	
			-5	신금리 1672대	286.0	
			-6	신금리 1673대	378.1	
			-7	신금리 1674대	446.7	
			-8	신금리 1675대	305.5	
			-9	신금리 1676대	305.5	
			-10	신금리 1677대	324.4	
			-11	신금리 1679대	575.8	
			-12	신금리 1680대	297.5	
			-13	신금리 1681대	459.3	
			-14	신금리 1682대	447.7	
			-15	신금리 1683대	335.0	
			-16	신금리 1711대	290.0	
			-17	신금리 1712대	288.8	
			-18	신금리 1713대	255.0	
-19	신금리 1714대	260.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sup>2</sup>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D1~ D16	D3	7,276.7	-1	신금리 1710대	319.1	
			-2	신금리 1709대	280.3	
			-3	신금리 1708대	287.2	
			-4	신금리 1707대	308.7	
			-5	신금리 1706대	307.5	
			-6	신금리 1705대	318.2	
			-7	신금리 1704대	336.4	
			-8	신금리 1703대	301.3	
			-9	신금리 1702대	256.4	
			-10	신금리 1701대	267.0	
			-11	신금리 1700대	379.4	
			-12	신금리 1699대	287.0	
			-13	신금리 1698대	269.2	
			-14	신금리 1697대	319.5	
			-15	신금리 1696대	267.8	
			-16	신금리 1695대	296.4	
			-17	신금리 1694대	376.6	
			-18	신금리 1693대	280.0	
			-19	신금리 1691대	320.9	
			-20	신금리 1690대	449.0	
			-21	신금리 1689대	280.1	
			-22	신금리 1688대	250.0	
			-23	신금리 1687대	264.8	
			-24	신금리 1686대	253.9	
	D4	1,547.5	-1	신금리 1771대	314.9	
			-2	신금리 1770대	280.7	
			-3	신금리 1769대	300.7	
			-4	신금리 1768대	339.4	
			-5	신금리 1767대	311.8	
	D5	1,531.6	-1	신금리 1784대	380.0	
			-2	신금리 1783대	452.1	
			-3	신금리 1782대	370.9	
			-4	신금리 1781대	328.6	
	D6	1,150.0	-1	신금리 1779대	286.8	
			-2	신금리 1778대	266.0	
			-3	신금리 1777대	251.0	
			-4	신금리 1776대	346.2	
	D7	4,370.0	-1	신금리 1787대	357.4	
			-2	신금리 1788대	364.1	
			-3	신금리 1789대	373.8	
			-4	신금리 1790대	249.6	
			-5	신금리 1791대	271.6	
			-6	신금리 1792대	279.5	
-7			신금리 1793대	283.9		
-8			신금리 1795대	384.7		
-9			신금리 1796대	283.5		
-10			신금리 1797대	450.5		
-11			신금리 1798대	372.5		
-12			신금리 1799대	268.5		
-13			신금리 1800대	430.4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sup>2</sup>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D1~ D16	D8	3,552.4	-1	광영동 919대	287.4	
			-2	광영동 929대	351.6	
			-3	광영동 928대	381.3	
			-4	광영동 927대	374.9	
			-5	광영동 926대	379.3	
			-6	광영동 925대	349.4	
			-7	광영동 924대	250.1	
			-8	광영동 923대	250.1	
			-9	광영동 922대	331.5	
			-10	광영동 921대	343.0	
			-11	광영동 920대	253.8	
	D9	3,392.0	-1	광영동 907대	304.7	
			-2	광영동 917대	304.5	
			-3	광영동 916대	440.9	
			-4	광영동 915대	299.7	
			-5	광영동 914대	347.0	
			-6	광영동 913대	253.8	
			-7	광영동 912대	253.7	
			-8	광영동 911대	319.9	
			-9	광영동 910대	316.7	
			-10	광영동 909대	275.6	
			-11	광영동 908대	275.5	
	D10	2,344.8	-1	광영동 934대	459.2	
			-2	광영동 935대	368.9	
			-3	광영동 936대	369.0	
			-4	광영동 937대	362.0	
			-5	광영동 938대	361.9	
			-6	광영동 939대	423.8	
	D11	9,468.9	-1	광영동 977대	329.7	
			-2	광영동 978대	329.7	
			-3	광영동 979대	2,745.9	
			-4	광영동 980대	530.6	
			-5	광영동 981대	530.7	
			-6	광영동 982대	530.7	
			-7	광영동 983대	449.9	
			-8	광영동 985대	485.0	
			-9	광영동 986대	518.0	
			-10	광영동 987대	351.3	
			-11	광영동 988대	436.4	
	-12	광영동 989대	398.3			
	-13	광영동 990대	398.3			
	-14	광영동 991대	537.3			
	-15	광영동 993대	336.1			
-16	광영동 994대	280.5				
-17	광영동 995대	280.5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sup>2</sup>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D1~ D16	D12	4,032.7	-1	광영동 976대	422.4	
			-2	광영동 975대	459.0	
			-3	광영동 974대	292.3	
			-4	광영동 973대	275.8	
			-5	광영동 972대	286.3	
			-6	광영동 971대	249.9	
			-7	광영동 970대	316.7	
			-8	광영동 969대	471.5	
			-9	광영동 968대	249.7	
			-10	광영동 967대	270.2	
			-11	광영동 966대	270.1	
			-12	광영동 965대	468.8	
	D13	7,679.2	-1	광영동 941대	293.6	
			-2	광영동 943대	338.1	
			-3	광영동 962대	337.8	
			-4	광영동 961대	343.1	
			-5	광영동 960대	343.1	
			-6	광영동 959대	343.2	
			-7	광영동 958대	343.3	
			-8	광영동 957대	288.7	
			-9	광영동 956대	288.7	
			-10	광영동 955대	288.7	
			-11	광영동 954대	315.9	
			-12	광영동 953대	316.0	
			-13	광영동 952대	599.8	
			-14	광영동 951대	457.9	
			-15	광영동 950대	269.6	
			-16	광영동 949대	253.4	
			-17	광영동 948대	255.5	
			-18	광영동 947대	254.9	
			-19	광영동 946대	311.2	
			-20	광영동 945대	418.1	
			-21	광영동 944대	307.3	
-22			광영동 943대	306.3		
-23			광영동 942대	405.0		
D14	676.3	-1	광영동 1084대	359.7		
		-2	광영동 1083대	316.6		
D15	704.1	-1	광영동 1081대	299.6		
		-2	광영동 1080대	404.5		
D16	1,081.8	-1	광영동 1078대	301.3		
		-2	광영동 1077대	280.2		
		-3	광영동 1076대	250.0		
		-4	광영동 1075대	250.3		

## 4) 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sup>2</sup>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합계		28,009.9	-	-	28,009.9	
F2~ F6	F2	3,244.8	-1	신금리 1618대	1,118.8	
			-2	신금리 1619대	1,060.0	
			-3	신금리 1620대	1,066.0	
	F3	6,971.0	-1	신금리 1623대	1,357.0	
			-2	신금리 1624대	1,507.0	
			-3	신금리 1625대	1,821.0	
			-4	신금리 1627대	2,286.0	
	F4	11,029.6	-1	신금리 1632대	887.7	
			-2	신금리 1633대	867.2	
			-3	신금리 1634대	1,010.0	
			-4	신금리 1635대	1,006.9	
			-5	신금리 1636대	887.4	
			-6	신금리 1637대	937.0	
			-7	신금리 1638대	887.4	
			-8	신금리 1639대	1,019.3	
			-9	신금리 1640대	877.8	
			-10	신금리 1641대	888.4	
			-11	신금리 1642대	800.0	
			-12	신금리 1643대	960.5	
	F5	5,185.5	-1	신금리 1645대	868.8	
			-2	신금리 1646대	1,529.1	
-3			신금리 1647대	1,090.6		
-4			신금리 1648대	1,697.0		
F6	1,579.0	-1	신금리 1649대	1,579.0		

5)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sup>2</sup>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합계		11,120.6	-		11,120.6	
G1~ G5	G1	1,988.7	-1	옥곡면 신금리 1726차	1,988.7	
	G2	1,296.7	-2	옥곡면 신금리 1802차	1,296.7	
	G3	2,316.3	-3	광영동 931차	2,316.3	
	G4	1,002.9	-4	광영동 877차	1,002.9	
	G5	4,516.0	-5	광영동 1088차	4,516.0	

6) 공공청사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sup>2</sup>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합계		9,833.6	-		9,833.6	
H1	H1	9,833.6	-1	광영동 1087공	9,833.6	

7) 어린이집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sup>2</sup>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합계		1,009	-		1,009	
II	II	1,009	-1	옥곡면 신금리 1660대	1,009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A1~ A20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li> <li>•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제조업소, 수리점, 장의사, 총포 판매사, 고시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은 1층에 한해 허용</li> <li>- 지하층은 주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의 학원, 직업훈련소, 독서실은 사용불가</li> <li>•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li> </ul>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외의 용도</li> </ul>
		건폐율	60%이하(제2종일반주거)	
		용적률	200%이하(제2종일반주거)	
		높 이	4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 배치는 가능한 남향배치 권장</li> <li>•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공공공간 조성</li> <li>• 종로(국지도로)와 접해 있는 필지에는 건축한계선 1m 설정</li> </ul>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로티 층수 및 높이 제한은 건축법 적용</li> <li>• 외벽의 재료 및 형태 등</li> <li>-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차양막을 설치하며, 2층과 3층 창문 등의 개구부에는 화분을 설치할 수 있는 플랜트 박스 또는 발코니 설치를 권장</li> <li>- 목재 등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외장은 돌출되지 않는 색과 재료를 사용</li> <li>• 지붕 및 옥탑 등</li> <li>-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필지는 도로변을 경사지붕으로 계획</li> <li>-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li> <li>·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생태/친환경도시형성에 일조</li> </ul> </li> <li>- 건축물의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사지붕의 물매는 세로:가로 = 1:3의 범위로 하며, 실외기 설치공간을 계획시 고려</li> <li>·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 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경사지붕 안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경우는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li> <li>- 건물의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태양열 에너지의 활용 권장</li> </ul> </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A1~ A20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 대문, 계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권장.</li> <li>- 담장재료는 투시형 또는 관목류 등의 생울타리로 권장.</li> <li>- 건축한계선에 의해 조성되는 공간에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생울타리로 차폐를 권장하며, 알코브를 설치하여 가로경관의 변화감 부여.</li> </ul> </li> <li>● 색채 및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의 풍부한 자연의 녹음을 잘 받아들여 주택의 색과 어울리는 밝고 편안한 감각적인 생활 을 만드는 색채 계획</li> <li>· 보조색 톤의 소재색을 사용하여 주조를 이루도록 배색할 수도 있도록 함</li> <li>·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계열의 색을 사용하며, 톤배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 단, 소재색을 사용할 경우 제시색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li> <li>· 지붕색은 저명도·저도의 회갈색으로 통일함</li> </ul> </li> <li>-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6개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 용간판, 창문이용광고물, 현수막,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공연간판, 선전 탐, 아취광고물은 설치할 수 있으며, 세로형간판, 애드벌룬, 벽보, 전 단, 교통시설 광고물은 설치 할 수 없음</li> <li>· 기타 건축물 색채 및 옥외광고물의 세부적인 사항은 ‘경관계획 보고서’ 기준을 준용함</li> </ul> </li> </ul> </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도로변 등에 면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li> </ul>

## 2)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D1~ D16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li> <li>•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li> <li>•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중 사행성용도 제외)</li> <li>• 제6호의 종교시설</li> <li>•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li> <li>•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제외)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li> <li>•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li> <li>•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li> <li>•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제외)</li> <li>•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li> <li>• 청소년보호법 제2조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li> </ul>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6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경관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점가의 간선가로변에 1m의 건축한계선 지정</li> <li>• 보행자도로 및 필지단변의 건축선으로부터 1m를 이격하여 배치토록 건축한계선을 계획하여 전면공지 조성 유도</li> <li>• 외벽의 재료 및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차양막을 설치하며, 2층과 3층 창문 등의 개구부에는 화분을 설치 할 수 있는 플랜트 박스 또는 발코니 설치를 권장</li> </ul> </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D1~ D16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 및 옥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필지는 도로변을 경사지붕으로 계획</li> <li>-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li> <li>·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생태/친환경도시형성에 일조</li> </ul> </li> <li>- 건축물의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사지붕의 물매는 세로:가로 = 1:3의 범위로 하며, 실외기 설치공간을 계획시 반드시 고려</li> <li>·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경사지붕 안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경우는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li> </ul> </li> <li>- 건물의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태양열 에너지의 활용 권장</li> </ul> </li> <li>● 담장, 대문, 계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권장.</li> <li>- 담장재료는 투시형 또는 관목류 등의 생울타리로 권장.</li> </ul> </li> <li>● 색채 및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의 풍부한 자연의 녹음을 잘 받아들여 주택의 색과 어울리는 밝고 편안한 감각적인 생활을 만드는 색채 계획</li> <li>·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계열의 색을 사용하며, 톤배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 단, 소재색을 사용할 경우 제시색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li> <li>· 지붕색은 저명도·저채도의 회갈색으로 통일함</li> </ul> </li> <li>-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6개 옥외광고물중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간판, 창문이용광고물, 현수막,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공연간판, 선전탑, 아취광고물은 설치할 수 있으며, 세로형간판, 애드벌룬, 벽보, 전단, 교통시설 광고물은 설치 할 수 없음</li> <li>· 기타 건축물 색채 및 옥외광고물의 세부적인 사항은 ‘경관계획 보고서’ 기준을 준용함</li> </ul> </li> </ul> </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도로변 등에 면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li> </ul>

## 3)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 (1) 연립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1~B3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li> <li>•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타 부대·복리시설</li> </ul>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외의 용도</li> </ul>
		건폐율	50% 이하(제2종일반주거)	
		용적률	180% 이하(제2종일반주거)	
		높 이	4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각각부에 공공조경 설치</li> <li>• 담장 및 울타리는 높이 1.2m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조성을 권장.</li> </ul>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호동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경관을 고려하여 조형적인 옥탑디자인 및 지붕 등 특징적 디자인 적용 가능</li> <li>• 동의 길이 : 6호연립 이내로 권장하며, 6호연립 초과일 경우 저층부(1개층 이상)에 필로티구조의 통로 설치</li> <li>•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물(간판)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준용</li> <li>- 지붕은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평지붕 설치시는 옥상녹화토록 함</li> </ul> </li> <li>• 건축물의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의 색채는 무채색 계열을 원칙으로 함</li> <li>- 건축물의 주조색은 채도 4미만, 보조색은 채도 6내외 권장</li> </ul> </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립주택용지의 대지외곽 경계 중 도로변에 연립주택용지 외부로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주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건축한계선 지정</li> <li>• 연립주택용지의 대지외곽 경계 중 보행자전용도로변에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 지정</li> <li>•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도로변 등에 면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li> </ul>	

(2) 아파트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C1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li> <li>•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복리시설은 주민편의시설로서 주택법 제2조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 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li> </ul> </li> </ul>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외의 용도</li> </ul>
		건폐율	30% 이하(제3종일반주거)	
		용적률	220% 이하(제3종일반주거)	
		높 이	20층 이하(평균)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주동배치는 가능한 남향배치 권장</li> <li>• 직각 배치구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 또는 주개 구부면이 기울기 <math>\pm 22.5^\circ</math> 범위내로 배치</li> <li>- 원형 또는 정방형 : 해당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기울기 <math>\pm 22.5^\circ</math> 범위내로 배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동의 길이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주동의 길이는 통경선, 단지경관 및 시각적, 심리적인 중압감을 갖지 않도록 한동의 길이는 6호연립을 초과할 수 없음</li> </ul> </li> <li>• 공동주택 각 1개동당 주동내 층고 차이는 3개층 이하로 설치</li> <li>• 건축물 외관 및 지붕형태, 옥탑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하되,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는 예외</li> <li>- 판상형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하고 탑상형 공동주택의 지붕은 옥탑구조물을 설치하여 조형성과 통일성을 부여함하며, 탑상형의 옥탑부에 상징적 조명 연출을 도모</li> <li>- 근린상가, 부대복리시설의 형태는 독창성과 고품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근린상가는 옥상에 적치 물 설치를 금하기 위하여 경사지붕등을 도입하며, 광고물을 고려하여 입면계획 실시</li> </ul> </li> <li>• 담장, 계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 및 울타리는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조성을 권장.</li> <li>-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생울타리 설치로 인해 이 용객이 해당시설에 진입하는데 불편해서는 안됨</li> <li>- 계단의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li> </ul> </li> <li>• 색채, 야간경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색은 각 권역별 제시색으로 통일함</li> <li>· 보조색은 권역별 제시된 색채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중채도이하의 색을 사용</li> <li>· 강조색은 중채도 이상의 색채 사용도 가능하나, 고채도 색은 피하도록 함</li> </ul> </li> </ul> </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도로등에 면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C2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li> <li>•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복리시설은 주민편익시설로서 주택법 제2조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 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li> </ul> </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외의 용도</li> </ul>
		건폐율	30% 이하(제3종일반주거)	
		용적률	220% 이하(제3종일반주거)	
		높 이	22층 이하(평균)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주동배치는 가능한 남향배치 권장</li> <li>• 직각 배치구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 또는 주개 구부면이 기울기 <math>\pm 22.5^\circ</math> 범위내로 배치</li> <li>- 원형 또는 정방형 : 해당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기울기 <math>\pm 22.5^\circ</math> 범위내로 배치</li> </ul> </li> </ul>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동의 길이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주동의 길이는 통경선, 단지경관 및 시각적, 심리적인 중압감을 갖지 않도록 한동의 길이는 6호연립을 초과할 수 없음</li> </ul> </li> <li>• 공동주택 각 1개동당 주동내 층고 차이는 3개층 이하로 설치</li> <li>• 건축물 외관 및 지붕형태, 옥탑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하되,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는 예외</li> <li>- 판상형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하고 탑상형 공동주택의 지붕은 옥탑구조물을 설치하여 조형성과 통일성을 부여함하며, 탑상형의 옥탑부에 상징적 조명 연출을 도모</li> <li>- 근린상가, 부대복리시설의 형태는 독창성과 고품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근린상가는 옥상에 적치 물 설치를 금하기 위하여 경사지붕등을 도입하며, 광고물을 고려하여 입면계획 실시</li> </ul> </li> <li>• 담장, 계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 및 울타리는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조성을 권장.</li> <li>-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생울타리 설치로 인해 이 용객이 해당시설에 진입하는데 불편해서는 안됨</li> <li>- 계단의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li> </ul> </li> <li>• 색채, 야간경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색은 각 권역별 제시색으로 통일함</li> <li>· 보조색은 권역별 제시된 색채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중채도이하의 색을 사용</li> <li>· 강조색은 중채도 이상의 색채 사용도 가능하나, 고채도 색은 피하도록 함</li> </ul> </li> </ul> </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도로등에 면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li> </ul>			

4) 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F2~ F6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li> <li>-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li> <li>-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중 사행성용도 제외)</li> <li>- 제6호의 종교시설</li> <li>-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li> <li>-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제외)</li> <li>-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li> <li>-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li> <li>-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li> <li>-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li> <li>-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외의 용도</li> </ul>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가로에 접한 획지들은 가로를 따라 고른 규모의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도록 비슷한 규모로 분할</li> <li>• 획지형태는 내부도로의 활용 및 차량보행자의 진출입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가급적 정형화하도록 함</li> </ul>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해 저층부(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셔터 사용   <table border="1" data-bbox="555 1272 1417 1420"> <tr> <td>투시형 벽면</td> <td>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td> </tr> <tr> <td>투시형 셔터</td> <td>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 포함)</td> </tr> </table> </li> </ul> </li> <li>·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li> </ul> </li> <li>• 옥상구조물 차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li> <li>-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li> </ul> </li> <li>• 건축물의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장 지구단위계획 디자인지침에 따름</li> </ul> </li> <li>•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의 이미지를 반영한 색채, 재료를 개별광고물에 30%이상 사용</li> </ul> </li> </ul>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 포함)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 포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도로변 등에 면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li> <li>•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필지는 외관에 꽃 또는 꽃의 이미지를 도입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 변의 건축 외관형태는 창문 등의 개구부에 플랜트 박스 설치</li> </ul>				

## 5) 공공청사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H1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 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li> <li>- 제14호 가목 공공업무시설</li> </ul> </li> </ul>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외의 용도</li> </ul>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벽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정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li> <li>·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체육공원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li> </ul> </li> </ul> </li> <li>•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경관부문 시행 지침의 기준을 따름</li> </ul> </li> <li>• 담장 설치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높이 1.2m 이하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li> </ul> </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도로변 등에 면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li> </ul>	

6) 주차장용지 - 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시설용지	공원
-	G1~G5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 4항 및 「광양시 주차장조례」 제9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노외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에 한함</li> <li>단,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함)의 20% 미만으로 함</li> <li>※공연장, 제조업소, 수리점, 장의사, 총포판매사, 고시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용도(주차전용건 축물 포함)</li> <li>「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 우 건축물의 연면적을 다음의 용도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30%미만으로 함</li> <li>- 건축법 시행령 별 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 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중 사행성 용도 제외), 판매 시설 중 상점,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차고, 주기장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 4항 및 「광양시 주차장조례」 제9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근린공공시설)에 한함.</li> <li>단,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 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함)의 20% 미만으로 함</li> <li>※공연장, 제조업소, 수리점, 장의사, 총포판매사, 고시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단란주점, 장의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골프연습장, 근린 공공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 제외</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li> </ul>
		건폐율	20% 이하	70% 이하	20% 이하
		용적률	20% 이하	400% 이하	20% 이하
높이	1층 이하	6층 이하	1층 이하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시설용지	공원
-	G1~G5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 4항 및 「광양시 주차장 조례」 제9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노외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에 한함</li> <li>단,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함)의 20% 미만으로 함</li> <li>※공연장, 제조업소, 수리점, 장의사, 총포판매사, 고시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용도(주차전용건 축물 포함)</li> <li>「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을 다음의 용도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30%미만으로 함</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 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중 사행성 용도 제외), 판매 시설 중 상점,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차고, 주기장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5항 및 「광양시 주차장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li> </ul>
		건폐율	20% 이하	70% 이하	20% 이하
		용적률	20% 이하	400% 이하	100% 이하
높이	1층 이하	6층 이하	4층 이하		

7) 어린이집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E1~E2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li> <li>- 제1호의 단독주택(가정어린이집 포함)</li> <li>- 제11호의 아동 관련시설 및 부속용도에 한함</li> </ul>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외의 용도</li> </ul>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건축선	-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광양시 고시 제 2023 - 60 호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2. 8.

광 양 시 장

###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백운2로 525-40 외 3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2373, 33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2. 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물번호부여 4건					
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 342-2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백운2로 525-40	20230208	20090623	광양시 명산인 백운산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2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78-3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국사봉로 76-91	20230208	20081001	국사봉이라는 봉우리이름에서 인용
3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204-6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옥진평길 73-13	20230208	20210520	옥진뜰에서 인용
4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843-9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북로 68	20230208	20090902	행정리명에서 인용

광양시 공고 제2023-271호

## 완전출국자 등 명의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를 공고합니다.

2023. 2. 8.

###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 완전출국자 등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3. 2. 8. ~ 2. 22.(14일간)
3. 공고대상 : 1대(붙임 참조)
4. 운행정지명령 등록 일자: 2023. 2. 22. 이후
5. 공고내용

가. 국내에 체류하다 완전 출국 또는 사망,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명의 차량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예고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께서는 **2022년 2월 22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운행정지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4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벌칙) 및 제82조(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061-797-3396)

**【붙임】 운행정지명령 예고 대상**

일련 번호	자 동 차 등록번호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21라7112	L**NG M*NH T**NG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0, 2**동 8*7호 (중동, 성호2차아파트)	완전출국 (2022. 12. 15.)

광양시 공고 제2023-280호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4항 및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차령초과 자동차 소유자의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말소신청 접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8일

## 광 양 시 장

- 공 고 명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 고 기 간 : 2023. 2. 8. ~ 2023. 2. 23. (15일)
- 말소등록예정일 : 2023. 2. 24. 이후
- 대 상 차 량

자동차소유자			이해관계 내 용	이해 관계인	송달지	반송 사유
차량번호	차 명	성 명				
09너8758	SM7	연*욱	저당	오재임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195번길 54	수취인불명
전남33나8612	쏘나타III. 8DOHCP RIME	최*주	저당	김봉연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694번지 1호	폐문부재

- 기 타 사 항 : 위 자동차의 이해관계인께서는 말소등록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이의제기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이후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전화: 061-797-3396, 3369)

광양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83호

붙 임 : 광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광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특성과 광양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광양시장이 지정하는 광양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광양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양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양시의회, 광양경찰서, 광양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광양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광양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광양시와 광양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 각 1명씩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84호

붙 임 : 광양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양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광양시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양시 행정동우회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양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지방행정동우회 분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광양시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동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동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동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85호

붙 임 :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양시 재경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광양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양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양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광양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경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86호

붙 임 :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76명”을 “1,18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51명”을 “1,15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5명”을 “2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181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145					
3급	1	1				
4급	10	4	1	2	3	
5급	63	27	2	8	14	12
6급 이하	1,070					
전문경력관	1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1					
연구직 계	5					
연구관	0					
연구사	5					
지도직 계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1,176명</u>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151명</u></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25명</u></p> <p style="text-align: center;">[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청</th> <th>의 회 사무국</th> <th>직속 기관</th> <th>사업소</th> <th>읍면동</th> </tr> </thead> <tbody> <tr><td>총 계</td><td>1,176</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정무직 계</td><td>1</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시 장</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 <tr><td>일반직 계</td><td>1,140</td><td></td><td></td><td></td><td></td><td></td></tr> <tr><td>3급</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 <tr><td>4급</td><td>10</td><td>4</td><td>1</td><td>2</td><td>3</td><td></td></tr> <tr><td>5급</td><td>63</td><td>27</td><td>2</td><td>8</td><td>14</td><td>12</td></tr> <tr><td>6급 이하</td><td>1,065</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전문경력관</td><td>1</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별정직 계</td><td>1</td><td></td><td></td><td></td><td></td><td></td></tr> <tr><td>6급상당 이하</td><td>1</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연구직 계</td><td>5</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연구관</td><td>0</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연구사</td><td>5</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지도직 계</td><td>29</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지도관</td><td>2</td><td></td><td></td><td>2</td><td></td><td></td></tr> <tr><td>지도사</td><td>27</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176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140						3급	1	1					4급	10	4	1	2	3		5급	63	27	2	8	14	12	6급 이하	1,065						전문경력관	1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1						연구직 계	5						연구관	0						연구사	5						지도직 계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p>제2조(정원의 총수) ----- ----- <u>1,181</u> <u>명</u> ----- -.</p> <p>1. ----- <u>1,152명</u></p> <p>2. ----- <u>29명</u></p> <p style="text-align: center;">[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청</th> <th>의 회 사무국</th> <th>직속 기관</th> <th>사업소</th> <th>읍면동</th> </tr> </thead> <tbody> <tr><td>총 계</td><td>1,181</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정무직 계</td><td>1</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시 장</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 <tr><td>일반직 계</td><td>1,145</td><td></td><td></td><td></td><td></td><td></td></tr> <tr><td>3급</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 <tr><td>4급</td><td>10</td><td>4</td><td>1</td><td>2</td><td>3</td><td></td></tr> <tr><td>5급</td><td>63</td><td>27</td><td>2</td><td>8</td><td>14</td><td>12</td></tr> <tr><td>6급 이하</td><td>1,070</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전문경력관</td><td>1</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별정직 계</td><td>1</td><td></td><td></td><td></td><td></td><td></td></tr> <tr><td>6급상당 이하</td><td>1</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연구직 계</td><td>5</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연구관</td><td>0</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연구사</td><td>5</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지도직 계</td><td>29</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지도관</td><td>2</td><td></td><td></td><td>2</td><td></td><td></td></tr> <tr><td>지도사</td><td>27</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181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145						3급	1	1					4급	10	4	1	2	3		5급	63	27	2	8	14	12	6급 이하	1,070						전문경력관	1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1						연구직 계	5						연구관	0						연구사	5						지도직 계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176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140																																																																																																																																																																																																																																																												
3급	1	1																																																																																																																																																																																																																																																											
4급	10	4	1	2	3																																																																																																																																																																																																																																																								
5급	63	27	2	8	14	12																																																																																																																																																																																																																																																							
6급 이하	1,065																																																																																																																																																																																																																																																												
전문경력관	1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1																																																																																																																																																																																																																																																												
연구직 계	5																																																																																																																																																																																																																																																												
연구관	0																																																																																																																																																																																																																																																												
연구사	5																																																																																																																																																																																																																																																												
지도직 계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181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145																																																																																																																																																																																																																																																												
3급	1	1																																																																																																																																																																																																																																																											
4급	10	4	1	2	3																																																																																																																																																																																																																																																								
5급	63	27	2	8	14	12																																																																																																																																																																																																																																																							
6급 이하	1,070																																																																																																																																																																																																																																																												
전문경력관	1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1																																																																																																																																																																																																																																																												
연구직 계	5																																																																																																																																																																																																																																																												
연구관	0																																																																																																																																																																																																																																																												
연구사	5																																																																																																																																																																																																																																																												
지도직 계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광양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87호

붙임 :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1.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월 150,000원
2.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의료비수당 : 월 30,000원
3.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0,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및 관계 기관에서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30일이내”를 “30일 이

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다음 달”을 “달”로 한다.

① 제8조제1항의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수당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별지 제1호서식
2.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의료비수당 : 별지 제1호서식
3.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제3호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당”을 “시장”으로, “지급을”을 “수당 지급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국가보훈 관계법령”이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국가보훈대상자----- -----.</p>
<p>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p> <p>1. ~ 7. (생략)</p> <p>&lt;신설&gt;</p>	<p>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u></p>
<p>제8조(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① <u>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한다. 다만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u></p> <p>1. <u>보훈명예수당 월 100,000원 지급</u></p>	<p>제8조(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① <u>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u></p> <p>1. <u>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월 150,000원</u></p>

<p>2. <u>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 300,000원 지급(제1호 해당자에 한함)</u></p> <p>② <u>제1항제1호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대상자는 수당지급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광양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자 이어야 하며, 관계기관에서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제외한다.</u></p> <p>제9조(지급 방법 등) ① <u>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lt;신 설&gt;</p>	<p>2. <u>국가보훈대상자 보훈의료비 수당 : 월 30,000원</u></p> <p>3. <u>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0,000원</u></p> <p>② <u>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광양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및 관계기관에서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u></p> <p>제9조(지급 방법 등) ① <u>제8조제1항의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수당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p> <p>1. <u>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별지 제1호서식</u></p> <p>2. <u>국가보훈대상자 보훈의료비 수당 : 별지 제1호서식</u></p> <p>3. <u>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별지 제2호서식</u></p> <p>② <u>제1항제3호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u></p>
<p>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지급</u></p>	<p>③ ----- ----- 30일 이내-----</p>

<p>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수당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u>다음 달</u>부터 제10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p> <p>④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u>별제 제2호 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이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p>	<p>----- -----.</p> <p>④ ----- --- 달----- ----- -----.</p> <p>&lt;삭 제&gt;</p>
<p>제10조(지급 중지의 결정 등) ① 수당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p> <p>1. ~ 3. (생략)</p> <p>②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u>제1항의</u>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0조(지급 중지의 결정 등) ① 시장----- ----- 수당 지급을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제1항 제1호 및 제2호----- -----.</p>

광양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88호

붙 임 :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 이상 주소”를 “주소”로,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사업)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월 150,000원
2. 참전유공자 참전의료비수당 : 월 30,000원
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0,000원
4.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지급) : 월 100,000원
5. 그 밖에 시장이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급신청) ① 제4조의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별지 제1호서식
  2. 참전유공자 참전의료비수당 : 별지 제1호서식
  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별지 제2호서식
  4.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지급) : 별지 제2호서식
- ② 제1항제3호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를 제10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신청서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8조(지급 중지의 결정 등) ①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한 경우
2.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3.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② 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조치)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개정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참전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6.25. 전쟁 참전 <input type="checkbox"/> 월남 전쟁 참전	
<b>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b> <b>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b>								<b>지급신청서</b>		처리기간 30일	
사망한 참전유공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사망일자										
신청인 ※ 사망위로금 :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 ※ 배우자 수당 : 배우자 신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 - □□□ (전화번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b>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b>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 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광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3. 참전유공자와 신청인의 가족관계등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에 따라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광양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참전 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 ----- -----.</p>
<p>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u>1년 이상</u>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u>참전유공자</u>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하지 아니한다.</p> <p>1.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u>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p> <p>2. (생략)</p>	<p>제3조(지원대상자) ----- ----- 주소----- ----- <u>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u>----- . ----- -----.</p> <p>1. ----- - 「<u>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39조제1항----- -----</p> <p>2.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원사업) <u>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p>	<p>제4조(지원사업) <u>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은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p>
<p>1. <u>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u></p>	<p>1. <u>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u> : 월</p>

<p><u>월 100,000원 지급</u></p> <p>2. <u>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0,000원 지급</u></p> <p>3. <u>그 밖에 시장이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u>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수당은 매월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u></p> <p>② <u>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u></p> <p>③ <u>참전명예수당은 그 신청한 날</u></p>	<p><u>150,000원 지급</u></p> <p>2. <u>참전유공자 참전의료비수당 : 월 30,000원 지급</u></p> <p>3. <u>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0,000원 지급</u></p> <p>4. <u>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지급) : 월 100,000원 지급</u></p> <p>5. <u>그 밖에 시장이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제5조(지급신청) ① <u>제4조의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p> <p>1. <u>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별지 제1호서식</u></p> <p>2. <u>참전유공자 참전의료비수당 : 별지 제1호서식</u></p> <p>3. <u>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별지 제2호서식</u></p> <p>4. <u>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지급) : 별지 제2호서식</u></p> <p>② <u>제1항제3호의 사망위로금을 지</u></p>
--	---

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매년 1월말까지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 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로 통보해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신설>

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방법) ①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신청서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8조(지급 중지의 결정 등) ①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한 경우
2.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p>&lt;신 설&gt;</p> <p>제7조 (생 략)</p>	<p>3. <u>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u>  <u>② 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1항제 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u></p> <p>제9조(환수 조치) <u>시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u></p> <p>1. <u>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u>  2. <u>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u>  3. <u>잘못 지급된 경우</u></p> <p>제10조 (현행 제7조와 같음)</p>
-------------------------------------	--

광양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89호

붙 임 :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각 축제의 추진주체”를 “추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홍보”를 “홍보, 수익사업, 경품·관광기념품 지급”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축제추진 운영자”를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축제의 자립화) ① 추진위원회는 축제의 자립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받은 사항에 한하여 축제장 내 유료관람지역에 대한 입장료 징수, 기념품 판매, 광고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적립으로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입장료 징수) ① 추진위원회는 축제장 내 유료관람지역을 지정하고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는 입장료 범위에서 지역사업장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4(주차료 징수) 추진위원회는 축제장 교통 혼잡 예방 등 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광양시 주차장 조례」에도 불구하고 축제장 일원의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의5(수익금 관리) ① 추진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축제 개최준비와 운영 등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익금은 추진위원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익금 관리 대장 등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중 “각 축제 추진주체”를 “추진위원회”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장료 면제대상

1.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 어린이
3.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광양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미만인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9.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의사상자. 다만,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 나. 의사상자 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 다. 의사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1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13. 학생 교육 활동을 위해 단체 입장하는 경우 인솔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초·중·고 교원
1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16. 「관광진흥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로서 단체관광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17.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p> <p>① <u>각 축제의 추진주체</u>는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일 6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축제프로그램, 예산의 집행, <u>홍보</u> 등 총괄 기획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며, 추진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제11조(재정관리) ① (생략)</p> <p>② <u>축제추진 운영자</u>는 축제추진에 수반되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축제행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lt;신 설&gt;</p>	<p>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p> <p>① <u>추진위원회</u>----- ----- -----.</p> <p>② ----- ----- - <u>홍보, 수익사업, 경품·관광기념품 지급</u> ----- ----- -----.</p> <p>제11조(재정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추진위원회</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의2(축제의 자립화) ① <u>추진위원회는 축제의 자립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u>추진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받은 사항에 한하여 축제장 내 유료관람지역에 대한 입장료 징수, 기념품 판매,</u></p>

<신 설>

광고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적립으로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3(입장료 징수) ① 추진위원회는 축제장 내 유료관람지역을 지정하고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는 입장료 범위에서 지역사업장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4(주차료 징수) 추진위원회는 축제장 교통 혼잡 예방 등 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광양시 주차장 조례」에도 불구하고 축제장 일원의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의5(수익금 관리) ① 추진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축제 개최준비와 운영 등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익금은 추진위원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p>제12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u>각 축제 추진 주체</u>는 평가 결과의 개선·보완 사항과 예산지원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③ <u>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익금 관리 대장 등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12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추진위원회</u>- ----- -----.</p> <p>④ (현행과 같음)</p>
---	--

광양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90호

붙 임 :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수수료 징수) ① 보건진료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증명발급
2. 유료 접종
3. 복합레진 치료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비급여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5조제2항을 따른다.

제5조의3(준용)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징수, 납부, 추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u>제5조의2(수수료 징수) ① 보건진료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각종 증명발급</u></li> <li>2. <u>유료 접종</u></li> <li>3. <u>복합레진 치료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u></li> </ol> <p>② 제1항의 수수료는 「<u>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u>」 제5조제2항을 따른다.</p>
<p>&lt;신 설&gt;</p>	<p><u>제5조의3(준용)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징수, 납부, 추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u>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u>」를 준용한다.</u></p>

광양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91호

붙 임 :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광양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

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사회적 재난을 야기할 수 있는 옥외 행사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6조의 신고의무를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광양시민은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제3조에 따른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2주 전까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일시·장소
2. 행사 주최·주관·후원
3. 행사의 주요 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 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 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시장은 해당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행사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 예방조치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

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시장은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동물보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92호

붙 임 : 광양시 동물보호 조례

## 광양시 동물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동물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동물 중에서 정서적 함양을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유실(遺失)·유기(遺棄)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서 내 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5. “동물보호센터”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

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등록대행자”란 동물을 등록함에 있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동물등록 업무를 위탁한 업체를 말한다.

9.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대행자 지정 및 관리) ①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중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무선식별장치 리더기 등을 갖추고 등록대행 업무를 신청한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등록대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에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등록 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유출한 경우

3. 등록신청을 받고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없이 지정을 해지한다.

④ 법령, 동물등록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대행업체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등록대행자 지정의 변경, 해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제5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유기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 관련 기관
4.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지정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되 재계약이 가능하며,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센터장은 분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4

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준수 사항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15조제7항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유기동물의 포획) ① 시장은 유기동물 및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 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물을 포획하여 보호 조치한 때에는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7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포획한 유실·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 또는 업무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으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2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입 사실을 확인 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분양, 기증 및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고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11조(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에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되,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해당 단체가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2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3조(업무의 지원) 시장은 동물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③ 명예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등록수수료) 법 제42조제1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수수료는 법 시행규칙 제48조와 같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93호

붙 임 : 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해당하는 동물로써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의미한다.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은 당해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 연간 5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다만,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4조(병원지정) ① 시장은 동물병원을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병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장애인 본인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를 지참해야 하고, 가족·친지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시의 지원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만 동물병원에 지불하면 된다.

② 시가 부담할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94호

붙 임 :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철거하는 등”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으로 한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p> <p>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u>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5조(지원방법) ①·② (생략)  <u>&lt;신 설&gt;</u></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p>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다.</p> <p>2. -----                      -----                      ----- <u>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u></p> <p>제5조(지원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u></p>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정 제431호

붙 임 :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정 제432호

붙 임 :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는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1]

##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현황

부서별	계	행정사무원				기술사무원					청원찰	비고
		소계	단순조무	비서요원	사건보조원	소계	청소요원	관리요원	현업요원	도로보수원		
총 계	438	235	114	8	113	165	5	139	11	10	38	
본소 청계	155	89	66	4	19	53	2	40	1	10	13	
기 예 산 실	3	3	3			0						*예산프로그램 및 법령집관리1 *시흥보물컴퓨터그래픽편집1 *성과관리자체평가보조1
전 정 책 실	1	1	1			0						*청년정책사업 지원1
홍 소 통 보 실	3	3	3			0						*기자실운영1 *SNS홍보1 *전산장비관리1
총 무 과	16	11	8	3		0					5	*비서실3 *기록물DB구축2 *각종인사자료DB구축1 *인쇄공1 *복무관리DB구축1 *문서사송및배부1 *고향사랑기부제운영1 *직소민원처리1 *시설물경비5
세 정 과	1	1	1			0						*고지서 송달1
징 수 과	5	4	1		3	1		1				*세외수입 D/B 구축1 *번호판영치1 *개별주택가격조사3
회 계 과	3	1	1			2	1	1				*청사전기 관리1 *회계결산업무보조1 *청사시설물관리1

부서별	계	행정사무원				기술사무원					정원 현황	비고
		소계	단순조무	비서요원	사영기술원	소계	청소요원	관리요원	원조요원	내근기술원		
민지적과	11	11	7		4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민원발급4</li> <li>*새주소사업도명DB구축1</li> <li>*공시지가조사4</li> <li>*차량등록업무보조1</li> <li>*부동산실거래업무보조1</li> </ul>
정보통신과	4	4	2		2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IS DB구축 및 갱신업무보조2</li> <li>*전화 교환원2</li> </ul>
지경제과	4	2	1	1		1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관리요원1</li> <li>*방문민원안내1</li> <li>*광양사랑상품권운영지원1</li> <li>*시설물경비1</li> </ul>
투자일자리과	2	2	2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리센터상담사1</li> <li>*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보조1</li> </ul>
철항만과	1	0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업무보조1</li> </ul>
주복지과	11	10			10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급여관리2</li> <li>*통합사례관리4</li> <li>*자원봉사관리3</li> <li>*OK생활민원관리1</li> <li>*보훈단체및회관관리1</li> </ul>
노장애회관	14	1	1			13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복지회관운영 및 관리요원5</li> <li>*노인회관관리1</li> <li>*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회복지사7</li> <li>*장애인 주차구역 단속1</li> </ul>
관광과	3	2	2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문화해설안내1</li> <li>*관광단지조성 보상업무보조1</li> <li>*관광업무보조1</li> </ul>
문화예술포	3	1	1			1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관리1</li> <li>*문화도시조성 지원1</li> <li>*시설물경비1</li> </ul>

부서별	계	행정사무원				기술사무원					정원 총합	비고
		소계	단순조무	비서요원	사영기술원	소계	청소요원	관리요원	원조요원	노무기술원		
체육과	19	7	7			8	1	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육행사지원보조1</li> <li>°체육시설관리7</li> <li>°수영장 운영6</li> <li>°체육시설물 청소1</li> <li>°시설물경비4</li> </ul>
환경과	3	3	3			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변구역사업 지원2</li> <li>°환경개선부담금자료관리1</li> </ul>
자 순 환 과	2	1	1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단투기단속원1</li> <li>°오수처리시설점검원1</li> </ul>
안 전 과	21	19	19			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안전관리종합상황실보조1</li> <li>°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7</li> <li>°하천정용인허가업무지원1</li> <li>°시설물경비2</li> </ul>
건 설 과	1	0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상업무 보조1</li> </ul>
도 재 생 과	1	0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1</li> </ul>
도 로 과	16	2	2			14		3	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로원10</li> <li>°하천퇴적토준설굴삭기운전원1</li> <li>°과적제한차량지도단속2</li> <li>°노상적치물단속1</li> <li>°도로사용료징수1</li> <li>°자전거유인인증센터운영1</li> </ul>
교 통 과	7	0				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태료고지서부과 및 징수보조1</li> <li>°불법주정차계도단속5</li> <li>° 시내버스 노선 및 승강장 관리1</li> </ul>
의 사 회 국	6	5	4	1		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문민원안내2</li> <li>°비서실1</li> <li>°시의회홈페이지관리1</li> <li>°전산,통신장비관리1</li> <li>°시설물경비1</li> </ul>

부서별	계	행정사무원				기술사무원					정원 원차량	비고
		소계	단순조무	비서요원	사업사무원	소계	청소요원	관리요원	원조요원	노무사무원		
직속 기관 소계	105	74	7	1	66	31	0	31	0	0	0	
보건 생과	5	5		1	4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문민원안내1</li> <li>*임상병리검사지원1</li> <li>*예방접종및전산등록1</li> <li>*결핵환자관리1</li> <li>*감염병관리1</li> </ul>
건강 진과	36	36			36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과 진료보조4</li> <li>*주민건강증진센터건강.영양.절주 상담2</li> <li>*주민건강증진센터물리치료1</li> <li>*금연클리닉운영4</li> <li>*건강생활실천운동.영양지도3</li> <li>*정신건강센터8</li> <li>*국가암,희귀난치성업무지원1</li> <li>*영양플러스사업1</li> <li>*치매안심센터운영12</li> </ul>
보건 합과	10	10			1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방진료보조1</li> <li>*난임부부지원,출산지원3</li> <li>*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6</li> </ul>
도시 보소	16	16			16	0						*방문건강관리16
농지 업과	6	2	2			4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문민원안내1</li> <li>*귀농귀촌상담요원1</li> <li>*유기동물포획전담요원2</li> <li>*백운제동촌테마공원운영2</li> </ul>
농산 물 마케팅과	4	2	2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산물종합가공장 운영2</li> <li>*농산물홍보판촉지원1</li> <li>*생활개선교육장운영1</li> </ul>

부서별	계	행정사무원				기술사무원					정원 원칙	비고
		소계	단순조무	비서요원	사영기술원	소계	청소요원	관리요원	원조요원	노무기술원		
매원예과	1	1	1			0						°매실관련 자료 관리1
산소특과	3	0				3		3				°숲길 등산지도 및 조사업무2 °숲가꾸기자원조사단1
기보급술과	24	2	2			22		22				°미생물비료 생산시설 관리2 °시가지꽃가꾸기사업7 °농기계수리5 °실험실감정업무3 °원예작물실증시험업무4 °병해충진단·예찰답관리1 °농업기술상담지원1 °농산물안전분석실운영1
사업소 소계	154	63	33	2	28	74	3	61	10	0	18	
교보육과	4	4	4	0		0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1 °보육재단운영지원1 °평생학습지원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1
아동친화도시과	11	11	3		8	0						°장난감도서관운영3 °드림스타트운영지원1 °아동통합사례관리5 °아동보호전문요원2
여가족과	22	20			20	1	1				1	°지역아동센터 방문학습 지도16 °취업설계사2 °취업상담원2 °유아수탁보호 및 여성문화센터청소1 °시설물경비1
도서관 운영과	27	19	19			3		3			5	°도서대출관리19 °기계시설물관리3 °시설물경비5

부서별	계	행정사무원				기술사무원					정원 현황	비 고
		소계	단순조무	비서요원	사영기술원	소계	청소요원	관리요원	현장요원	내근기술원		
상수도과	26	2	1	1		16	2	14			8	*기계시설물관리2 *정수장시설물관리2 *감침원6 *요금전산처리1 *수도관누수탐사1 *마을상수도관리4 *방문민원안내1 *급수체적관리시스템관리1 *시설물경비8
하수도과	2	0				2		2				*하수관거시설물 관리1 *하수관거 유지관리시스템 관리 1
하수처리과	13	3	3			10	0	10				*기계시설물관리10 *수질실험연구3
생활폐기물과	12	2	2			10	0		10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9 *계근대관리2 *휠로더운전원1
택지과	1	1		1		0						*방문민원안내 1
공원과	7	0	0			7		7				*공원관리5 *공원관리지원1 *생태공원숲해설가1
녹지과	5	0				5		5				*가로수관리3 *녹지대및솔밭성관리2
시설관리과	4	0	0			4		4				*커뮤니티센터운영관리1 *분수대 유지관리2 *구봉산관리1

부서별	계	행정사무원				기술사무원					정원 원차량	비 고
		소계	단순조무	비서요원	사영기술원	소계	청소요원	관리요원	원조요원	내근기술원		
휴양림소	21	1	1			16		16			4	*숲해설사3 *휴양림및생태숲관리6 *세입징수보조및매표소관리1 *목재문화체험관운영5 *백운산치유의숲운영2 *시설물경비4
읍면동소계	17	4	4	0	0	7	0	7	0	0	6	
광양읍	10	1	1			7		7			2	*산업업무지원1 *서천체육공원관리2 *시가지꽃길조성5 *시설물경비2
중마동	4	2	2			0					2	*제증명발급보조1 *주민자치센터운영보조1 *시설물경비2
광영동	1	0				0					1	*시설물경비1
금호동	2	1	1			0					1	*주민자치센터운영보조1 *시설물경비1

## 현 행

[별표 1]

###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현황

부서별	계	행정사무원				기술사무원					정원외 내근로자수	비 고
		소계	단순조무	비서요원	사건조정원	소계	청소요원	관리요원	현업요원	노무		
총 계	454	225	98	10	117	191	19	149	13	10	38	
본 소 청 계	145	76	49	5	22	59	9	39	1	10	10	
기 획 예산실	3	3	3			0						*예산프로그램 및 법령집관리1 *시흥보물컴퓨터그래픽편집1 *성과관리자체평가보조1
홍 보 소통실	3	3	3			0						*기자실운영1 *SNS홍보1 *전산장비관리1
총무과	14	11	8	3		0					3	*비서실3 *기록물DB구축2 *현관인원안내1 *각종인사자료DB구축1 *일제강점기 및 사회단체업무DB구축1 *인쇄공1 *복무관리DB구축1 *문서사송및배부1 *시설물경비3
세정과	1	1	1			0						*고지서 송달1

## 개 정 안

[별표 1]

###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현황

부서별	계	행정사무원				기술사무원					정원외 내근로자수	비 고
		소계	단순조무	비서요원	사업조정원	소계	청소요원	관리요원	현업요원	노무		
총 계	438	235	114	8	113	165	5	139	11	10	38	
본 소 청 계	155	89	66	4	19	53	2	40	1	10	13	
기 획 예산실	3	3	3			0						*예산프로그램 및 법령집관리1 *시흥보물컴퓨터그래픽편집1 *성과관리자체평가보조1
전 략 정책실	1	1	1			0						*청년정책사업 지원1
홍 보 소통실	3	3	3			0						*기자실운영1 *SNS홍보1 *전산장비관리1
총무과	16	11	7	3		0					5	*비서실3 *기록물DB구축2 *각종인사자료DB구축1 *인쇄공1 *복무관리DB구축1 *문서사송및배부1 *고향사랑기부제운영1 *직소민원처리1 *시설물경비5
세정과	1	1	1			0						*고지서 송달1

현행											개정안														
징수과	6	5	1		4	1					*세외수입 D/B 구축1 *번호판영치1 *개별주택가격조사4	징수과	5	4	1		3	1					*세외수입 D/B 구축1 *번호판영치1 *개별주택가격조사3		
회계과	6	1	1			5	4	1			*청사전기 관리1 *회계결산업무보조1 *청사시설물관리4	회계과	3	1	1			2	1	1				*청사전기 관리1 *회계결산업무보조1 *청사시설물관리1	
민원지적과	14	14	9		5	0					*통합민원발급6 *새주소사업도로명DB구축1 *공시지가조사5 *차량등록업무보조1 *부동산실거래업무보조1	민원지적과	11	11	7		4	0						*통합민원발급4 *새주소사업도로명DB구축1 *공시지가조사4 *차량등록업무보조1 *부동산실거래업무보조1	
정보통신과	5	5	3		2	0					*GIS DB구축 및 갱신업무보조2 *전화교환원3	정보통신과	4	4	2		2	0						*GIS DB구축 및 갱신업무보조2 *전화 교환원2	
지역경제과	3	1		1		1				1	*시장관리요원1 *방문민원안내1 *시설물경비1	지역경제과	4	2	1	1		1				1		*시장관리요원1 *방문민원안내1 *광양사랑상품권운영지원1 *시설물경비1	
투자일자리과	3	3	2		1	0					*기업투자유치업무 보조1 *일자리센터상담사1 *마을공동체지원센터운영1	투자일자리과	2	2	2		0	0						*일자리센터상담사1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보조1	
철강항만과	1	0				1				1	*수산업무보조1	철강항만과	1	0				1				1		*수산업무보조1	
주민복지과	12	11	1		10	1				1	*통합조사관리1 *의료급여관리2 *통합사례관리4 *자원봉사관리3 *OK생활민원관리1 *보훈단체맞회관관리1	주민복지과	11	10			10	1				1			*의료급여관리2 *통합사례관리4 *자원봉사관리3 *OK생활민원관리1 *보훈단체맞회관관리1

현행													개정안														
노인 장애인과	17	1	1				16	2	14				노인복지회관운영 및 관리요원6 노인회관관리 독거노인응급안전상담및기술요원7 독거노인돌봄이센터서비스관리1 광양노인복지관청소1 장애인주차구역단속1	노인 장애인과	14	1	1				13	0	13				노인복지회관운영 및 관리요원5 노인회관관리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회복지사7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1
관광과	4	3	2	1			1		1				관광문화해설안내1 관광단지조성보상업무보조1 관광업무보조1 방문민원안내1	관광과	3	2	2				1		1				관광문화해설안내1 관광단지조성 보상업무보조1 관광업무보조1
문화 예술과	2	0					1		1			1	문화재관리1 시설물경비1	문화 예술과	3	1	1				1		1		1	문화재관리1 문화도시조성 지원1 시설물경비1	
체육과	17	6	6				8	3	5			3	체육행사지원보조2 체육시설관리5 광양수영장안내4 체육시설물청소3 시설물경비3	체육과	19	7	7				8	1	7		4	체육행사지원보조1 체육시설관리7 수영장 운영6 체육시설물 청소1 시설물경비4	
환경과	3	3	3				0		0				수변구역사업 지원2 환경개선부담금자료관리1	환경과	3	3	3				0		0			수변구역사업 지원2 환경개선부담금자료관리1	
자원 순환과	2	1	1				1		1				무단투기단속원1 오수처리시설점검원1	자원 순환과	2	1	1				1		1			무단투기단속원1 오수처리시설점검원1	
안전 총괄과	3	1	1				0					2	재난안전관리종합상황실보조1 시설물경비2	안전 총괄과	21	19	19				0				2	재난안전관리종합상황실보조1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7 하천정용인허가업무지원1 시설물경비2	





현행											개정안												
교육보육과	4	4	3	1	0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1 *보육재단운영지원1 *평생학습지원1 *방문민원안내1	교육보육과	4	4	4	0	0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1 *보육재단운영지원1 *평생학습지원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1
이동화도시과	10	10	3		7	0					*장난감도서관운영3 *드림스타트운영지원1 *아동통합사례관리5 *아동보호전문요원1	이동화도시과	11	11	3		8	0					*장난감도서관운영3 *드림스타트운영지원1 *아동통합사례관리5 *아동보호전문요원2
여성가족과	27	24			24	2	2			1	*지역아동센터 방문학습 지도17 *취업설계사5 *취업상담원2 *유아수탁보호및여성문화센터청소2 *시설물경비1	여성가족과	22	20			20	1	1		1	*지역아동센터 방문학습 지도16 *취업설계사2 *취업상담원2 *유아수탁보호 및 여성문화센터청소 *시설물경비1	
도서관운영과	28	21	21			3				4	*도서대출관리21 *기계시설물관리3 *시설물경비4	도서관운영과	27	19	19			3			3	5	*도서대출관리19 *기계시설물관리3 *시설물경비5
상수과	28	2	1	1		18	2	16		8	*기계시설물관리2 *정수장시설물관리2 *검침원8 *요금전산처리1 *수도관누수탐사1 *마을상수도관리4 *방문민원안내1 *급수체적관리시스템관리1 *시설물경비8	상수과	26	2	1	1		16	2	14	8	*기계시설물관리2 *정수장시설물관리2 *검침원6 *요금전산처리1 *수도관누수탐사1 *마을상수도관리4 *방문민원안내1 *급수체적관리시스템관리1 *시설물경비8	
하수과	2	0				2		2			*하수관거시설물 관리1 *하수관거유지관리시스템관리1	하수과	2	0				2			2	*하수관거시설물 관리1 *하수관거 유지관리시스템 관리 1	
하수처리과	15	3	3			7	4	3		5	*청사청소4 *기계시설물관리3 *수질실험연구3 *시설물경비5	하수처리과	13	3	3			10	0	10		*기계시설물관리10 *수질실험연구3	

